

서정대학교 제79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□ 심의 안건 : 총 1건

안건1.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의 건

- 근거 1. 서정대학교 규정집 「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」
2. 제79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개최 승인의 건

< 회의개요 >

□ 회 의 명 : 제79차 대학평의위원회

□ 회의일시 : 2024.11.28.(목) 11:00

□ 회의장소 : 본관 4층 회의실

□ 참석의원 : 2 인

□ 회의안건 :

안건1.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의 건

[1] 회의 경과

□ 회의 개최

- 서정대학교 「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」에 따라, 대학 평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·자문이 필요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평의원회의 사무를 소관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는 회의 개시 전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대학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회의 개최 여부를 사전 공지하며, 의원들에게 회의 안건 및 회의자료 송부하여 회의 내용 사전 안내.
- 의장 포함 총원 12인 중 7인 출석으로 회의 성원이 되었음.

□ 의원 소개

- 「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」 제3조(구성과 자격), 제4조(임기) 및 대학평의원회 의원 위촉에 관한 건에 의거하여 2022.8.11. 자 위촉되었던 대학 평의원회 11명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촉 절차를 거쳐 각 구성단위 대표 협의체의 추천을 거쳐 총장의 승인 받아 2024.8.11. 자 위촉으로 의원 구성되어 의장 및 부의장 호선을 완료함.

연번	직명	성명	구성단위
1	의장	안성규	교원
2	의원	양경승	
3	의원	정하정	
4	의원	김현재	
5	의원	김상우	직원
6	부의장	송은정	
7	의원	신영록	
8	의원	김하성	외부
9	의원	안성준	
10	의원	윤형한	
11	의원	양삼승	
12	의원	박성현	학생

□ 안전 심의

● 안전 1 :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의 건(2024.12.01. 자)

○ 주요의견

- 「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」 제2조(기능) 제2호에 의거하여 대학평의위원회에서는 대학의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의 개정(안)이 최종 승인되기 전 개정(안)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.
- 금번 안전으로 상정된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은 교육혁신처, 평생직업교육처 산하의 학사학위지원센터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한 학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당해부서의 요청에 따라 사전 의견수렴 기간을 진행한 후, 2024.11.18. 자 공람 공고(10일간)를 실시하여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음.
- 금번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「학칙」은 ①부서 요청에 따른 입학자격 관련 위원회 개설, ②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반영, ③행정적 효율 제고를 위한 별표 등의 추가 등 크게 세 가지 이며, 「학칙 시행세칙」은 학칙의 졸업이수학점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연관되어 개정되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음. 개정(안)의 구체적인 내용은 [회의자료1]의 공람 건 서류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음.
- 위의 내용에 따라, 대학평의위원회에서는 2024년 12월 1일 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본 개정(안)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2024.12.1. 자로 시행될 예정.

→ 대학 평의위원회는 2024.12.1. 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해 심의완료

□ 회의 결과

▶ 심의안건

안건 1.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의 건(2024.12.1. 자 개정)

- 서정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

참석인원 전원 참석 으로 심의안건 함(심의)

성명	가	부	의결일	참조의견
안성규	○		2024.11.28.	
양경승	○		2024.11.28.	
정하정	○		2024.11.28.	
김현재	○		2024.11.28.	
김상우	○		2024.11.28.	
송은정	○		2024.11.28.	
신영록				
김하성				
안성준	○		2024.11.28.	
윤형한				
양삼승				
박성현				

[2] 제79차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· 의결서

※ 해당안건에 대한 가, 부 여부에 ○표 해주십시오.

【안건 1】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의 건(2024.12.1. 자 개정)

가	부	비고
○		

위와 같이 심의함

2024년 11월 28일

대학평의위원회 의원

안성규

(위원장인)

[2] 제79차 대학평의회 심의 · 의결서

※ 해당안건에 대한 가, 부 여부에 O표 해주십시오.

【안건 1】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의 건(2024.12.1. 자 개정)

가	부	비고
O		

위와 같이 심의함

2024년 11월 28일

대학평의회 의원

양경능

(서명/인)



[2] 제79차 대학평의회 심의 · 의결서

※ 해당안건에 대한 가, 부 여부에 O표 해주십시오.

【안건 1】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의 건(2024.12.1. 자 개정)

가	부	비고
O		

위와 같이 심의함

2024년 11월 28일

대학평의회 의원

정 하 경 (서명/인)

[2] 제79차 대학평의회 심의 · 의결서

※ 해당안건에 대한 가, 부 여부에 O표 해주십시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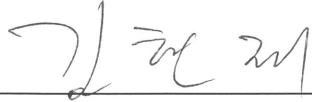
【안건 1】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의 건(2024.12.1. 자 개정)

가	부	비고
O		

위와 같이 심의함

2024년 11월 28일

대학평의회 의원


(서명/인)

[2] 제79차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· 의결서

※ 해당안건에 대한 가, 부 여부에 O표 해주십시오.

【안건 1】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의 건(2024.12.1. 자 개정)

가	부	비고
○		

위와 같이 심의함

2024년 11월 28일

대학평의위원회 의원

김상우

(서명/인)

[2] 제79차 대학평의원회 심의 · 의결서

※ 해당안건에 대한 가, 부 여부에 O표 해주십시오.

【안건 1】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의 건(2024.12.1. 자 개정)

가	부	비고
O		

위와 같이 심의함

2024년 11월 28일

대학평의원회 의원

송 은 정

(서명인)

[2] 제79차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· 의결서

※ 해당안건에 대한 가, 부 여부에 O표 해주십시오.

【안건 1】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의 건(2024.12.1. 자 개정)

가	부	비고
O		

위와 같이 심의함

2024년 11월 28일

대학평의위원회 의원

안성근

 (서명인)

[3] 회의 자료

[회의자료1] 2024.11.18. 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 공람 건 1부.

[4] 회의 사진



[회의자료]



서 정 대 학 교



수신자 수신처참조

(경유)

제 목 서정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 공람 공고(2024.11.18. 공고)

1. 관련근거

가. 서정대학교 규정집 「학칙」 제74조(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) 내지 제75조(공고기간)

나. 2024년 하반기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 의견 제출 요청(기획조정실-2024-7389)

2.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서정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의 개정을 위해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불임과 같이 공람 공고를 시행하오니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공람이 완료된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은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, 2024년 12월 1일 자 시행 예정입니다.

※ 공람 후 수정의견제출 등 기타 문의는 조항별 소관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.

불임 : 1. 학칙 개정 공람 공고문 1부.

2.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 1부.

3. 학칙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기 획 조 정 실 장

수신처: 국제교류처 외 27

대리 기안11/18 기획전략과장 검토11/18 기획조정실장 결재11/18
강한모 오성범 이지훈

협조자

수신

시행 기획조정실-2024-7530 (2024.11.18) 접수 ()

(우) 11429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서정로 27

www.seojeong.ac.kr

Tel 031-860-5286

/Fax 031-859-6936

/E-mail

hanmo10@seojeong.ac.kr

/ 공개

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공람 공고

서정대학교 기획조정실에서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 조화를 거쳐,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열람하시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.

기간 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하고 2024년 12월 1일 자 시행합니다.

- 다 음 -

1. 대 상 :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
2. 공람기간 : 공람일로부터 10일간
3. 관련부서 : 각 부서 및 학과, 교수협의회
4. 의견제출 : 기획조정실 대리 강한모

2024년 11월 18일

서정대학교 기획조정실장

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

규정명 :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

1. 개정 사유

1) 학칙

- ▶ 졸업학점 변경으로 인한 반영
- ▶ 졸업학점 조정으로 인한 부수사항 반영
- ▶ 입학자격에 대한 사항 수정사항 반영

2) 학칙 시행세칙

- ▶ 졸업학점 조정으로 인한 반영

2. 주요 내용

구분	조항	주요 개정내용
학칙	제17조(입학자격)	관련 분야 재직경력 인정기준표에 대한 내용 명시 및 심의·의결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지정
학칙	제33조(학점이수)	최대 이수학점 24점에서 21점으로 변경
학칙	제46조(졸업)	▪ 졸업 필요 최소학점 2년제 70→65점, 3년제 110→105점, 4년제 130→125점 변경(교육혁신처) ▪ 전공심화과정 졸업 학점 변경(130→125학점)(학사학위지원센터)
학칙	별표5	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재직경력 인정 기준표 신규 제정
학칙 시행 세칙	제48조(졸업의 기준)	▪ 졸업 필요 최소학점 2년제 70→65, 3년제 110→105, 4년제 130→125 변경 ▪ 전공심화과정 졸업 학점 변경(130학점 → 125학점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규정명: 학칙

조 문	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17조(입학자격)	제17조(입학자격) ①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 ②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하며, 관련 학과 졸업자는 <별표4>에 해당한다. 단, <별표4>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공심화과정 개설학과의 관련학점을 50%이상 이수한 경우 관련과 졸업자로 인정하며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③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선정학과 및 이외의 학과에서도 성인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다. ④전문기술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 1.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2.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. 관련 분야 재직경력(학사학위 취득 전 경력이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)이 3년 이상인 자 4. 제3호에 따른 관련 분야는교육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.	제17조(입학자격) ①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 ②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하며, 관련 학과 졸업자는 <별표4>에 해당한다. 단, <별표4>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공심화과정 개설학과의 관련학점을 50%이상 이수한 경우 관련과 졸업자로 인정하며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③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선정학과 및 이외의 학과에서도 성인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다. ④전문기술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 1.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2.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. 관련 분야 재직경력(학사학위 취득 전 경력이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)이 3년 이상인 자 4. 제3호에 따른 관련 분야의 재직경력은 <별표5>에 해당하며, 전문기술석사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<개정 2024.12.01.>	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 6조5항의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 요건 중 '재직경력 인정기준'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고시 폐지 및 학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바, 재직경력 인정 기준표 신규 제정 및 그에 따른 내용을 학칙에 명시

제33조(학점 이수)	제33조(학점 이수) ③전공심화과정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, 24학점 까지 이수 할 수 있다. 다만, 학과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2.12.04.> <개정 2014.02.26., 2023.12.15.>	제33조(학점 이수) ③전공심화과정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, 21학점 까지 이수 할 수 있다. 다만, 학과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2.12.04.> <개정 2014.02.26., 2023.12.15., 2024.12.01.>	졸업학점 변경으로 인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 변경
제46조(졸업)	제46조(졸업) ②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70학점 이상, 3년제 110학점 이상, 4년제 1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본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1년제 학과는 20학점 이상, 2년제 학과는 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,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 ③학부(과)는 필요한 경우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 졸업인증 기준 설정 및 시행여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(과)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한다.	제46조(졸업) ②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65학점 이상, 3년제 105학점 이상, 4년제 125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본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1년제 학과는 20학점 이상, 2년제 학과는 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,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25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2.01.> ③학부(과)는 필요한 경우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 졸업인증 기준 설정 및 시행여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(과)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한다.	진 과정 졸업학점 조정에 따른 반영 전문학사과정 졸업 최소 이수학점 조정에 따라, 전공심화과정 졸업 학점 변경
부칙	부칙 제1조(시행일) ①이 학칙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학과통합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종전의 창업경영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영학과 소속으로 본다. 제3조(이수학점 변경 및 성적의 취소 기준 변경, 졸업학점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이 학칙 중 제33조 제2항, 제44조 제2호, 제4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 단, 제46조 제2항의 전공심화졸업학점은 2024학년도 후기졸업생부터 적용한다.	부칙 제1조(시행일) ①이 학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학과통합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종전의 창업경영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영학과 소속으로 본다. 제3조(이수학점 변경 및 성적의 취소 기준 변경, 졸업학점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이 학칙 중 제33조 제2항, 제44조 제2호, 제4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 단, 제46조 제2항의 전공심화졸업학점은 2024학년도 후기졸업생부터 적용한다.	
별표 5	신규제정	별도첨부	

※ 조항별로 따로 입력 할 것.

※ 신·구 대조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개정된 내용에는 색깔, 밑줄 등의 표시를 할 것.

※ 조항 신설 및 삭제 시에는 현행, 개정(안) 칸 중 한쪽에만 입력할 것.(제정 시에는 개정(안) 부분에만 제정 규정 입력, 삭제 시에는 현행 부분에 기존 규정 입력)

※ 개정(안) 부분에는 규정 제·개정 표시 방식에 의거하여 조항에 신설, 개정, 삭제, 전문개정, 본조신설 등의 규정 변동 이력을 표시할 것.

[별 표5]

전문기술석사과정 재직경력 인정기준

계열	과정	전공	주요 내용	관련 분야 재직 경력
공학	미래자동차과정	지상교통	철도, 자동차, 특수차량 등 유사전공	도시철도공사(지하철공사), 고속철도공단, 경전철 사업단, 기술직 공무원, 전기철도 설계업체, 전기철도 시공업체, 전기철도 유지·보수업체, 철도차량 및 기기 생산업체, 전력설비 관련업체, 유·무선 통신관련업체, 신호제어 및 자동화, 철도운용DIA, 철도관제, 철도운전, 정비차량운전, 철도선로시설물 유지보수 철도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등 유사직무
		기계	산업기계 및 관련 장치설비의 설계, 제작, 이용 관리 등 유사전공	기계기술자, 건설기계기술자, 엔진 및 기관기술자, 자동차설계원, 공구제조원, 공작기계조작원, 기계설계기획, 절삭가공, 특수가공, 기계조립, 기계생산관리, 기계품질관리, 기계장비설치·정비 등 유사직무
		자동차	자동차 설계, 내연기관, 자동차 전기전자 등 유사전공	자동차관리사, 자동차생산업체, 중장비생산업체, 자동차유통 및 관리업체, 자동차정비/검사업체의 직원, 자동차정비사 등 유사직무
		전기	전력시스템, 전기전자재료, 제어공학, 정보통신공학 등 유사전공	전자제어계측기술자, 전력전기공학기술자, 전기공사기술자, 전기제어기술자, 전기안전기술자, 전력자동화기술자, 전력설비기술자, 내·외선공사, 전기기기설계, 전기기기유지보수 등 유사직무
		전자	전자공학, 전자정보, 디지털시스템 등 유사전공	전자제품개발 설계기술자, 전자제어계측기술자, 전자부품조립 및 검사원, PCB설계기술자, 전자응용기기개발, 전자응용기기생산, 전자부품기획, 전자부품개발, 전자부품생산 등 유사직무
		재료	신소재 제조 및 가공, 재료공학 등 유사전공	재료공학기술자, 금속공학기술자 등 유사직무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규정명: 학칙 시행세칙

조 문	현	개 정(안)	비고
제48조(졸업의 기준)	제48조(졸업의 기준) ①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전문학사 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(3년제 학과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자, 학사학위 과정 중 본 과정은 8학기 이상 등록한 자, 전공 심화 과정은 2학기(1년 과정), 4학기(2년 과정) 이상 등록한 자(개정 2007.03.01., 2012.12.04., 2016.02.29.) 2. 2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(개정 2020.02.14., 2022.03.01., 2024.09.01.) 3. 3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110학점 이상인 자(신설 2004.03.25.) <개정 2020.11.23., 2022.03.01., 2024.09.01.> 4. 전공심화과정은 총 취득학점이 130학점 이상인 자(신설 2012.12.04.) <개정 2020.11.23., 2022.03.01., 2024.04.15.> 5. 4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130학점 이상인 자(신설 2016.02.29.) <개정 2020.11.23., 2022.03.01., 2024.09.01.> ②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 <개정 2017.04.27.> ③삭제 <2004.03.25.> ④교직 과목의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총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⑤전문기술석사과정의 졸업사정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3.12.15.>	제48조(졸업의 기준) ①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전문학사 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(3년제 학과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자, 학사학위 과정 중 본 과정은 8학기 이상 등록한 자, 전공 심화 과정은 2학기(1년 과정), 4학기(2년 과정) 이상 등록한 자(개정 2022.03.01., 2024.09.01. 2024.12.01.) 2. 2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65학점 이상인 자(개정 2020.02.14., 2022.03.01., 2024.09.01. 2024.12.01.) 3. 3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105학점 이상인 자(신설 2004.03.25.) <개정 2020.11.23., 2022.03.01., 2024.09.01., 2024.12.01.> 4. 전공심화과정은 총 취득학점이 125학점 이상인 자(신설 2012.12.04.) <개정 2020.11.23., 2022.03.01., 2024.04.15., 2024.12.01.> 5. 4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125학점 이상인 자(신설 2016.02.29.) <개정 2020.11.23., 2022.03.01., 2024.09.01.> ②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 <개정 2017.04.27.> ③삭제 <2004.03.25.> ④교직 과목의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총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⑤전문기술석사과정의 졸업사정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3.12.15.>	전문학사과정 졸업 최소 이수학점 조정에 따라, 전공심화과정 졸업 학점 변경

부칙	부 칙	부 칙	
부칙	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졸업 기준 학점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이 학칙 시행 세칙 중 제48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25학 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	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졸업의 기준 적용시기) 제48조(졸업의 기준)의 1항 은 2025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	

※ 조항별로 따로 입력 할 것.

※ 신·구 대조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개정된 내용에는 색깔, 밑줄 등의 표시를 할 것.

※ 조항 신설 및 삭제 시에는 현행, 개정(안) 칸 중 한쪽에만 입력할 것.(제정 시에는 개정(안) 부분에만 제정 규정 입력, 삭제 시에는 현행 부분에 기존 규정 입력)

※ 개정(안) 부분에는 규정 제·개정 표시 방식에 의거하여 조항에 신설, 개정, 삭제, 전문개정, 본조신설 등의 규정 변동 이력을 표시할 것.